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7
----------	-----

2023. 10.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한자어·일본어식어투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센터의 기능에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나.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의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5조)
- 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공개경쟁 모집·채용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 확

보(안 제6조)

라.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시 수탁기관에 통보일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안 제8조)

마.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 확대(안 제12조)

(1)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수강료 50% 감면(막내나이 18세까지)

(2)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수강료 전액 감면(막내나이 제한없음)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세출예산 다자녀 가정 감면지원액으로 20,138천원 제출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석평가 제외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능력개발발전센터(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직업교육 수강료 및 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용어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세부 사항 검토

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치 신설(제2조제4항 및 별표1 신설)

[별표 1]

센터의 위치(제2조제4항 관련)

연 번	위 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4~7층 (역삼동, 강남구함께나눔센터)

- 위 개정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를 별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나.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신설(안 제3조)

안 제3조 제8호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신설)

- 현행 조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기능교육사업 등 7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5조¹⁾를 반영한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

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기간 조정(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 ③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하 삭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²⁾를 감안하여 개정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현행 위탁기간 5년 및 재계약 기간 3년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같은 기간(5년)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라.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11조제2항)

1) 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제2항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u>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막내자녀 13세까지) 사용료의 20퍼센트,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7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제2항 ① <u>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다둥이 행복카드(유효기간 무관)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② <u>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u>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또는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u> 2. ~ 3. (생략) ③ 삭제

- 현행 조례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20%를 감경하되 막내자녀는 13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세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수강료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여성능력개발센

터의 직업교육 수강료 및 보육시설 이용료의 50%까지 감경하고, 막내자녀 나이도 18세까지 완화하였으며, 세 자녀의 경우에는 그 이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면제하는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출산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출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마.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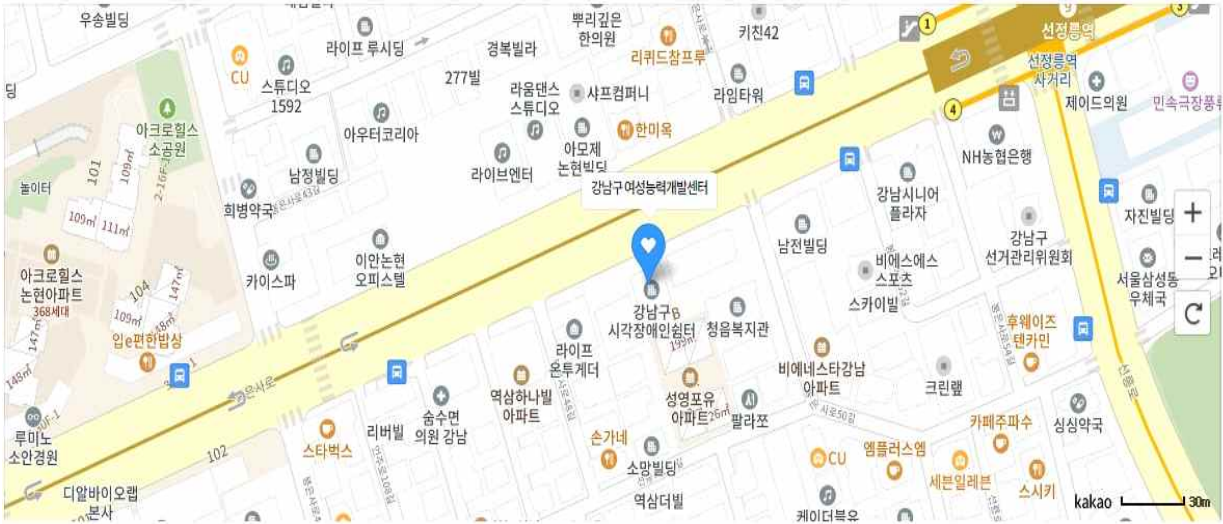
-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탁기관 종사자 모집 채용시 공개경쟁 방식 채택(안 제6조제3항)과 수탁기관 계약해지 서면 통보 기간 완화(안 제8조제3항: 30일전 → 60일전)는 현행 조례 범위에서 기 실행 중인 사항을 조례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참고자료

1

센터 위치도

□ 위치 : 강남구 봉은사로320 4~7층(강남구함께나눔센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20(역삼동681-43) 강남구함께나눔센터4층~7층

전 화 02-544-8440

팩 스 02-544-8680

주변지하철

  선정릉역 4번출구에서 150m

2

여성능력개발센터 현황

□ 설 립 일 : 1997년 9월

□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회장:박에스더)

▶ 위탁기간 : 2021. 01. 01 ~ 2025. 12. 31 (5년)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 규 모 : 4~7층(연면적 776.76㎡)

□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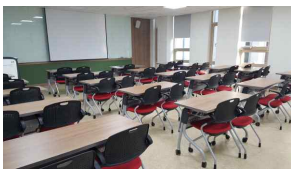
▶ 7층 : 701, 702, 703 강의실

▶ 6층 : 종합실습실, 정보화교실

▶ 5층 : 집단상담실, 취업상담실, 강사휴게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 4층 :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창업보육지원실

□ 관련사진

			
	7층 701강의실	7층 702강의실	7층 703강의실
			
	6층 종합실습실(의류)	6층 종합실습실(미용)	6층 정보화교실
			
	5층 집단상담실	5층 취업상담실	5층 강사휴게실
			
	4층 요리교실	4층 바리스타실	4층 창업보육지원실

건물전경

4층 요리교실

4층 바리스타실

4층 창업보육지원실

3

센터 주요사업

□ 운영실적 (2022년)

(단위:개,명)

구 분	개설 강좌수	등록인원
계	253	6,023
외부지원	4	296
구보조지원*	20	262
학점은행제	10	143
전문가 양성	15	211
자격증 취득	52	1,198
취·창업	66	1,764
직업능력기초	24	579
미니특강	62	1,570

※구보조지원사업(가족정책과) : ① 폭력예방 위촉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사업, ②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③WIN진로코칭 프로그램, ④구민참여단

□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교육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연50강좌) ▶ 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격증취득) ▶ 사회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사후관리(학습동아리)
2	취창업지원사업	▶ 취업상담 및 알선 ▶ WIN 진로코칭집단상담 ▶ 채용설명회 ▶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 예비창업자 상담 ▶ 창업공간(창업보육지원실) 지원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3	경력단절예방사업	▶ 경력개발상담실 운영(경력개발, 심리·고충 상담) ▶ 동아리·진로직업체험 강사파견 ▶ 강남구 취·창업 박람회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사업
4	양성평등사업	▶ 4대폭력예방교육 위촉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 ▶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 [여성의날기념] 여성에게 장미를
5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질 의 : 제3조 내용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정안 제목 “기능”을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 답 변 : 조 제목 “기능”은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요즘의 다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감안해 의원의 지적과 같이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 판단됨

- 질 의 :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하는 가정의 부모·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에, 두 자녀 가정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음. 출산 장려 등의 취지에 맞지 않음.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변 : 이번 개정 취지가 초 저출생을 완화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익히 출산 하고 상관없는 높은 연령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과연 저출생 완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 제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7. 토론 요지

- 조의 제목을 내용과 적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수강료 면제·감면 조항의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방법 등을 구체적화 하는 등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발의일자 : 2023. 10. 13.

제267호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의 제목을 내용과 적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수강료 면제·감면 조항의 내용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의 제목을 규정 내용과 적합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
- 수강료 면제와 감면 규정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연령 기준을 통일성 있게 명시함(안 제12조)
- 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방법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 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 센터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및 강의실

2. 세미나실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4. 경력개발지원실
5. 전시실
6. 강당
7. 보육실
8.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제3조(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2. 기능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과정 개설·운영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상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봉사·취업·창업 등을 위한 상담·지도
5. 연구사업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제시
6. 보육사업 : 센터의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지역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역여성단체 또는 해외여성관련단체 등과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제2장 센터의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종사자 임면)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장
2. 교육·훈련 담당자
3. 서무·회계 담당자
4. 취업·창업 관련 담당자
5. 연구·조사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임명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위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

지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센터의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강료 등

제11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 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센터에 설치·구비된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제함)
-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

제13조(수강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4.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5.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

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 시설장은 분기별로 수입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사업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센터의 이용

제15조(이용정원) 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이용자의 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여성(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실 : 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인으로

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

가. 1순위 : 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나. 2순위 : 여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다. 3순위 :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제1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센터의 안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8. 교육의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쳐 원활한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8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의 교육실·회의실·세미나실·강당 등의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수와 보수 등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수강료 등 징수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제2조 관련)

연번	위치
1	강남구 봉은사로 320 4~7층 (역삼동, 강남구함께나눔센터)

[별표 2]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강료 등 부과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단위	기준금액	부과기준
직업교육		1인/월	15,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20,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2일 기준
			25,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3일 기준
전문교육		1인/월	30,000원~ 200,000원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구청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한 교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교양교육		1인/월	20,000원~ 40,000원	1일 2시간 이내, 주 2일 기준 (구청장이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교육은 소수정예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4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아동교육		1인/월	20,000원~ 40,000원	1일 1시간 이내, 주 3일 기준 (구청장이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교육은 소수정예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4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보육실 사용료		1인/월	5,000원~ 10,000원	교육 수강시간에 한함
교육실 · 회의실 ·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20,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단, 특수기자재 사용 시 별도로 함
강당		1시간	30,000원	3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10,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단, 특수기자재 사용 시 별도로 함
창업보육 지원시설	창업보육실	m ² 당/월	10,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관리비 별도
	창업준비실	부스당/월	15,000원 이내	보증금 500,000원 이내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명칭) ①·② (생략)	제2조(설치 및 명칭)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u>강남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	③ 서울특별시 <u>강남구청장은</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여성의 -----.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능)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u>주요기능</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사업) ----- ----- ----- <u>주요 사업</u> 은 ----- -----.
1. ~ 8. (생략)	1. ~ 8.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다둥이 행복카드(유효기간 무관)</u> 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u>부모·자녀들</u>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u>부모·자녀들(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만제한)</u>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u>다둥이 행복카드</u> 를 소지한 <u>두 자녀 가정</u> 또는 <u>두 자녀</u>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1. <u>두 자녀</u>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개 정 안	수 정 안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2.·3. (생 략)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 ~ ③ (생 략) ④ <u>구청장은 수탁 기간 중에는 수탁기관이 수강료 등의 수입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제16조(이용자의 자격) ----- -----.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u>여성 단</u>,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u>있다</u>. 2. (생 략)	2.·3.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u>구청장은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사업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제16조(이용자의 자격) ----- -----.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u>여성(단</u>,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u>있다</u>.) 2.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u>갖춘</u> 여 성 전문기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 가. ~ 다. (생 략) [별표 1] <u>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u> 위치 (제2조 관련)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u>갖춘</u> 전 문기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 하고자 하는 여성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u>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u> 위치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한자어·일본어식 어투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의 기능에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나.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의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5조)
- 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공개경쟁 모집·채용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 확보(안 제6조)
- 라.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시 수탁기관에 통보일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안 제8조)
- 마.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 확대(안 제12조)

- (1)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수강료 50% 감면(막내나이 18세까지)
- (2)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수강료 전액 감면(막내나이 제한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세출예산 다자녀 가정 감면지원액으로 20,138천원 제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석평가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 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 센터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및 강의실

2. 세미나실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4. 경력개발지원실
5. 전시실
6. 강당
7. 보육실
8.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제3조(기능)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2. 기능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과정 개설·운영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상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봉사·취업·창업 등을 위한 상담·지도
5. 연구사업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제시
6. 보육사업 : 센터의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지역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역여성단체 또는 해외여성관련단체 등과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제2장 센터의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종사자 임면)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장
2. 교육·훈련 담당자
3. 서무·회계 담당자
4. 취업·창업 관련 담당자
5. 연구·조사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임명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위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

지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센터의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강료 등

제11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 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센터에 설치·구비된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7. 다둥이 행복카드(유효기간 무관)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또는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

제13조(수강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4.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

5.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 시설장은 분기별로 수입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 기간 중에는 수탁기관이 수강료 등의 수입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센터의 이용

제15조(이용정원) 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이용자의 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여성 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실 : 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기업인

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

가. 1순위 : 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나. 2순위 : 여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

다. 3순위 :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제1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센터의 안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8. 교육의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쳐 원활한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8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의 교육실·회의실·세미나실·강당 등의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수와 보수 등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수강료 등 징수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제2조 관련)

연번	위치
1	강남구 봉은사로 320 4~7층 (역삼동, 강남구함께나눔센터)

[별표 2]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강료 등 부과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단위	기준금액	부과기준
직업교육		1인/월	15,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20,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2일 기준
			25,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3일 기준
전문교육		1인/월	30,000원~ 200,000원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구청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한 교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교양교육		1인/월	20,000원~ 40,000원	1일 2시간 이내, 주 2일 기준 (구청장이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교육은 소수정예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4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아동교육		1인/월	20,000원~ 40,000원	1일 1시간 이내, 주 3일 기준 (구청장이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교육은 소수정예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4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보육실 사용료		1인/월	5,000원~ 10,000원	교육 수강시간에 한함
교육실 · 회의실 ·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20,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 · 일 ·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단, 특수기자재 사용 시 별도로 함
강당		1시간	30,000원	3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10,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 · 일 ·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단, 특수기자재 사용 시 별도로 함
창업보육 지원시설	창업보육실	m ² 당/월	10,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관리비 별도
	창업준비실	부스당/ 월	15,000원 이내	보증금 500,000원 이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중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수강료의 50% (막내나이 18세까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경우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막내나이 제한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예상비용(연간)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총 계	20,138천원	
2자녀의 부모·자녀	12,638천원	$75,000\text{원} \times 337\text{명} \times 50\% = 12,638,000\text{원}$
3자녀 이상의 부모·자녀	7,500천원	$75,000\text{원} \times 100\text{명} \times 100\% = 7,500,000\text{원}$

4.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7급 박초운(02-3423-5813)